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5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허영 · 이해식 · 박상혁
박정현 · 박정 · 홍기원
김영환 · 한민수 · 김태선
박용갑 · 박균택 · 주철현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국가·지방 병행·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반환·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
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
85조의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수수료)”를 “(응시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를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개정규정은 관련 대통령령의 정비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중 응시수수료 금액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정비 전까지는 이 법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5조의2(<u>응시수수료의 면제</u>)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